동작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

구 분	대 상	비 고
면 제	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소년·소녀가장 포함) 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급~3급 장애인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	
50% 감면	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급~6급 장애인 2) 만 65세 이상 어르신 3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)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
구비서류	1) 수강신청서(수강료 감면대상자 해당여부 체크) 2)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- 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(또는 복지카드) - 국가유공자 증명서 - 한부모가족 증명서 - 주민등록증 -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.	

수강료 감면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수 강 명</td><td>강 좌 명</td><td></td><td>강의기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(남/ 여)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></td><td>연 락 처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수 강 료</td><td colspan="5">금 원정 (₩)</td></tr>
<tr><td>감면률
(금액)</td><td colspan="5">% 〔금 원정 (₩)〕</td></tr>
<tr><td>실 제
수강료</td><td colspan="5">금 원정 (₩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계좌입금
통 장</td><td>거래은행</td><td></td><td>예금주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계좌번호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감면사유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/table>

위와 같이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